

농 어 업 고 용 인 력 지 원 특 별 법 시 행 령 안

1. 의결주문

신규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및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원·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24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제5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심의, 시·도 계획 및 시·군·구 계획 포함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조, 제3조)

-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변경 시 중앙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2) 시·도계획, 시·군·구계획 수립 시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 목표 및 방향, 인력 수급관리 및 지역간 연계협력, 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법 제6조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주기, 범위, 방법,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4조)

- 1) 실태조사 범위는 조사대상연도에 인력을 고용한 농어업경영체와 고용인력으로 하며,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함
- 2)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3) 농어업고용인력 실태 파악을 위해 4대 보험 등의 가입 현황, 외국인등록정보, 농어업경영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정부 지원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5조)

- 1) 지자체에 대한 역량 강화, 외국인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안전교육, 한국어 교육, 통역 지원, 외국인고용인력 및 사용자에 대한 통역 및 고용·노무 관리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라. 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구체화함(안 제6조~제7조)

- 1)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농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로서 2인 이상 인력 및 컴퓨터 등의 시설을 보유한 경우 인력지원센터로 지정
- 2)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 규정

마.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바. 법 제17조에 따른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의 발굴을 위한 선정 방법을 구체화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규정(안 제9조)

사. 농어업경영체에 3년 이상 근속한 장기근속 인력을 대상으로 우수인력을 선정하고 심사절차 등 세부사항은 고시로 규정(안 제10조)

아. 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법 제20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개
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1조)

자. 법 제21조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구체화함(안 제12조~제13조)

- 1) 농협,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 2)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추진일정

- 1) 제정안 확정 : '23. 10월
- 2) 관계부처협의 : '23. 10월
- 3) 입법예고 : '23. 11월
- 4) 규제심사 : '23. 12월 ~ '24. 1월
- 5) 법제처 제출 : '24. 1월

나. 기타

- 제정안(별첨)

대통령령 제 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
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
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제3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광역시
·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
· 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의 농어
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조사대상연도에 인력을 고용한 농어업경영체와 농어업경영체에 고용된 농어업고용인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현황 등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현황 등 농어

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현황 등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현황 등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정보로서 성별, 연령,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근무처 현황 등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연구사업에 따른 자료로서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로서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자료로서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교육·안전교육 및 한국어 교육, 통역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고용·노무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2.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3. 인력지원센터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지정신청서와 서류 등을 검토·확인하여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실적을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인권침해 피해에 관한 사항
2. 폭언, 폭행, 성희롱·성폭력·성추행 등의 인권침해 피해에 관한 사항
3. 직장내 괴롭힘 및 차별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진정 접수·신고 지원
2.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장 교육 지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2. 그 밖에 인권상담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이하 “우수 농어업경영체”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하여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농어업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 농어업경영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

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은 동일한 농어업경영체에 3년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농어업기술발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2. 농어업 분야 봉사활동, 사회공헌 등을 통해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농어업 분야에 계속하여 취업하거나 창업할 목적으로 직무 관련 자격 취득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미래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 고용인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인원 및 선정요건, 신청기간,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정요건,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인력·전담조직·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기관 및 지정기관에 위탁한 업무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지역조합, 품목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인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1. 농어업고용인력 구인·구직, 교육 또는 상담, 작업장 이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담자가 1명 이상일 것 2. 그 밖에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이 1명 이상일 것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1. 농어업고용인력 구인·구직 등의 상담을 하기 위한 전화전용 회선을 1회선 이상 설치할 것 2. 인터넷을 통하여 구인·구직 등의 상담 또는 일자리 정보 입력을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것 3.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을 확보할 것

[별표 2]

인력지원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제4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3]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21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4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100

100

100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2.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3.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발급기관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 발급기관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 발급기관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 발급기관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농업·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서

- ☐ 15. ☐ 16. ☐ 17.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직인

직인

- 16 -